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33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 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교육 주요 정책의 입안 등 업무 추진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라. 위원의 해촉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수당 지급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1052jjh@korea.kr)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 교육정책의 입안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대전교육 기본 방향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전교육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3. 대전교육 주요 정책 추진 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4. 대전교육 주요 정책 홍보와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